



## 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      공고 제 002 호  
(경유)

제목 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- 동정부과-18652호(2021.10.21.)와 관련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입법예고문(안) : 붙임 입법예고문  
나. 예고방법 :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  
다. 공고일자 : 2021. 10. 22.  
라. 공고기간 : 2021. 10. 23.~ 11. 11. (20일간)

불 공  
임  
고 입법예고문 1부. 끝.

공  
고

주무관 김동섭 생활체육팀장 주재봉 동정부과장 10/22  
代이창하

협조자 주무관 김경준 의회법제팀장 박성현 기획조정과장 김창수

공  
고

시행 동정부과-18694 ( 2021.10.22 ) 접수 ( )  
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(예관동) / <http://www.junggu.seoul.kr>  
전화 3396-4684 / 전송 / kds0415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 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을 일부 개정  
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 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위약금 최소화로 사용료를 납부하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의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
- 나. 상위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규정을 조례 신설 (11조의2 사용료의 반환)
- 나.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요금 감면 규정 구체화(제1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동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684, FAX : 3396-8613, E-mail : kds0415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## 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(사용료의 반환)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(총 사용료의 10%)을 반환 할 수 있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나열된 태풍, 흥수, 화재, 감염병 등과 같은 ‘자연재난’ 또는 ‘사회재난’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.

1.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

- 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
- 나. 사용예정일 1~4일전 : 위약금 공제 후 반환
- 다. 사용예정일 이후 : 취소일 기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 공제 후 반환

2.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

- 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
- 나. 사용예정일 1~4일전 :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
- 다. 사용예정일 이후 : 취소일 기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

3.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

- 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
- 나. 사용예정일 1~4일전 : 위약금 공제 후 반환
- 다. 사용예정일 이후 : 반환 불가

#### 4.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대관 취소

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

나.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: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

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자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나열된 태풍, 홍수, 화재, 감염병 등과 같은 '자연재난' 또는 '사회재난'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의 3항 1호를 개정하고 제2호부터 제8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~ ② 현행과 같음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분 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
9. ~ 12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1조의2 (사용료의 반환)</u></p>	<p><u>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(총 사용료의 10%)을 반환 할 수 있다.</u>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나열된 태풍, 홍수, 화재, 감염병 등과 같은 ‘자연재난’ 또는 ‘사회재난’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</u></p> <p>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</p> <p>나. 사용예정일 1~4일전 : 위약금 공제 후 반환</p> <p>다. 사용예정일 이후 : 취소일 기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 공제 후 반환</p> <p><u>2.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</u></p> <p>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나. 사용예정일 1~4일전 :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</u></p> <p><u>다. 사용예정일 이후 : 취소일 기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</u></p> <p><u>3.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</u></p> <p><u>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</u></p> <p><u>나. 사용예정일 1~4일전 : 위약금 공제 후 반환</u></p> <p><u>다. 사용예정일 이후 : 반환 불가</u></p> <p><u>4.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대관 취소</u></p> <p><u>가. 사용예정일 5일 전 : 전액 반환</u></p> <p><u>나.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: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나열된 태풍, 홍수, 화재, 감염병 등과 같은 '자연재난'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또는 ‘사회재난’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(생 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</p>	<p>제12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</u></p>
	<p><u>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</p>
	<p><u>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</u></p>
<p><u>2. ~ 5. (생 략)</u></p> <p>(④ · ⑤ (생 략)</p>	<p><u>9. ~ 12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u>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